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2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: 박성연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재진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서호연,
유정인, 이봉준, 최민규,
허 훈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기존 흙과 섞어 묻는 것만 허용하던 시립자연장지의 자연장 방법을 생분해성수지제품 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한편, 6개월 미만으로 사망한 영아의 경우 문헌 상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연장의 방법으로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외에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 경우 용기는 상위법령에 따른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.
- 나.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,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시민으로 포함하도록 함(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묻되,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.

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이어야 한다.

1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 분해성수지제품

2.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

별표 ※ 비고(1) 중 “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”를 “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(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, 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의2(자연장의 방법 등) ① <u>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며,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 묻는다.</u></p> <p><신 설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4조의2(자연장의 방법 등) ① <u>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(骨粉)을 묻되, 용기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.</p> <p>1.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6호 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</p> <p>2. <u>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 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분	관련 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의2(자연장의 방법 등)	×	별도 비용수반 없음
2	별표(비고1)	△	태어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사민으로 포함함에 따라 재정수입의 미미한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동 개정안 별표(비고1) 개정에 따라 세입감소¹⁾가 발생할 여지²⁾가 있으나, 관련부서³⁾ 확인결과 6개월 미만 영아사망에 대한 현황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 2023년 영아사망·모성사망·출생전후기사망 통계(통계청 발표)에 따르면 서울지역 1년 미만⁴⁾ 영아사망자 수는 72명으로 이를 고려해 세입감소를 추정할 시 동 개정안의 재정영향은 미미할 것 (최대 2천만원 수준으로 추정)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 희 선
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 ☎ 02-2180-7954
 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재 서울시립승화원 업무를 대행(市 해당부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「대행사업비」 형식으로 수령)
 ⇒ 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은 정수 익일 市 소관 회계별로 세입 처리함에 따라 서울시 재정수입이며 이는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됨

2) 서울특별시민과 다른지역주민 간 사용요금 차이가 있어 6개월 미만 사망 영아의 사용료를 다른지역주민 요금에서 서울특별 시민 요금으로 변경할 시 세입감소 발생의 여지가 있음
 (Ex. 화장시설 소인 사용료 : 서울특별시민 100천원, 다른지역주민 400천원)

3)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 추모시설운영처 문의

4) 연단위 사망통계는 있으나 월단위 사망에 대한 통계는 부재

[붙임] 현행 「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 별표

[별표] <개정 2019. 5. 16.>

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기준(제7조 관련)

구분	내 용	사 용 요 금			
		서울특별시민	다른지역주민		
묘 지	사용료	◦ 조성분묘·봉안묘(1제곱미터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185,000 92,500	370,000 185,000	
		◦ 비조성분묘(1제곱미터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28,320 14,160	56,640 28,320	
	관리비 (매5년마다)	◦ 조성분묘·봉안묘(1제곱미터당)	27,500	27,500	
	화장시설	사용료	◦ 일반시민(1구당) - 대 인(만 13세 이상) - 소 인(만 12세 이하) - 사 산 아 - 개장유골	120,000 100,000 50,000 60,000	1,000,000 400,000 200,000 400,000
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공헌자			무료	무료	
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			50,000	50,000	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			무료	무료	
◦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			무 료	무 료	
◦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사망자 <신설>				400,000	
◦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<신설>			120,000	500,000	
봉안당	사용료	◦ 일반시민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200,000 100,000	600,000 300,000	
		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100,000 50,000	300,000 150,000	
		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100,000 50,000	240,000 120,000	
		◦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100,000 50,000	240,000 120,000	
		관리비 (매5년마다)	◦ 일반 시민(1위당)	100,000	180,000
			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	50,000	90,000
	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		25,000	45,000	
	◦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 (1위당)		25,000	45,000	
	자연장지	사용료 (40년)	◦ 일반시민(1위당)	500,000	1,500,000
			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(1위당)	250,000	750,000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			250,000	750,000	
◦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 (1위당)			250,000	750,000	

※ 비교(1) : 위 표의 서울특별시민에는 시립화장시설, 시립봉안시설, 시립자연장지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며, **서울특별시 또는 위 장사시설이 설치된 관할 행정구역에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를 말한다**

※ 비교(2) :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는 자녀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(고양,과주 포함)이고 서울특별시 (고양,과주 포함)소재 병원 또는 장례직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경우를 말한다. <신설>